

과세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과세함에 따라 소득세의 납부여부에 따라 주민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주민세소득세할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였다.

10) 신고납부 기한 등의 연장사유 추가(영제11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납부 등을 연장하는 사유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를 추가하였으며, 영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1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 등 조정(영제73조)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어 계약후 잔금지급전 또는 잔금지급후 즉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으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도 증여계약후 30일 이내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12) 유흥주점영업 등에 대한 중과기준 개선 등(영제84조의3)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기준 면적을 두고, 적용상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을 정비 보완하였다. 무도유흥주점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서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립살롱 및 요정은 영업장의 면적이